

# 인천항만공사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서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수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공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사, 은행의 동반성장을 통한 항만·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등)

- ① ‘기준금리’라 함은 본 협약을 위해 가입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정기예금(1년 만기,금리확정형, 이하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가입일 당시 공사와 은행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② ‘보전금리’라 함은 은행이 공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공사가 보전해주는 금리 우대 부분으로, 공사가 예치하는 정기예금의 ‘기준금리’에서 차감하는 금리를 말한다.
- ③ ‘보전금리’는 본 협약 체결 시점에서 공사와 은행이 협의하여 정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보전금리’의 변경은 변경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변경 1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협력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사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⑥ ‘협약대출배수’란 총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통상 정기예금 신규금액의 2배 이내에서 정한다.
- ⑦ ‘우대금리’라 함은 은행이 본 협약에 의해 ‘협력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때, 은행의 여신금리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리에서 차감하는 금리를 뜻하며, 연 우대금리는 공사와 은행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업무의 범위 및 절차)

- ① 공사는 은행에 ( 10 )억원의 정기예금을 제2조 제①항의 ‘기준금리’에서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로 1년간 예치하고, 은행은 ( 10 )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공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 ② 공사는 협력기업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협력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 ③ 대출지원 여부는 은행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하고, 공사는 대출기업의 대출금 연체, 미상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협약 종료 시 은행은 공사의 지급요청에 의하여 예탁금과 총 지원한도 중 대출 미공급 분에 대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기업 및 대상별 대출한도)

- ① 본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대상은 공사가 추천하는 공사의 협력기업 및 협력기업임이 확인된 기업으로 하며,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수요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협력기업별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이내로 하며, 은행은 협력기업의 대출 심사 전 대출금액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해 공사에 확인한다.
- ③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은 그 용도에 따라 기업운전자금, 기업시설자금으로 취급 가능하도록 한다.
- ④ 협약 종료 시 자동감면 특례지원은 종료된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해당 대출 만기일까지 이자에 대한 우대가 유지된다.

#### 제5조(책임의 한계)

- ① 공사의 정기에금은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공사는 여신 미회수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공사의 협력기업 추천행위는 협력기업을 위한 보증, 채무인수 등의 법적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③ 대출대상은 공사가 추천한 협력기업 중 은행의 여신업무내규에 의한 대출적격자로 한다. 다만 추천 협력기업일지라도 은행의 심사결과에 의거 취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법원 및 감독기관 등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 후 인천항만공사가 예치하는 예금의 가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 ③ 위 제2항에 따른 본 협약의 갱신 시 정기에금 재예치 금액은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④ 정기에금금리 및 대출금리는 정기에금 재예치 및 대출기한 연장일에 재산정되며, '보전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⑤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본 협약을 위해 가입한 정기에금을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 협약의 해제 및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법정해제·해지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로써 이를 해결한다.
- ② 은행은 본 협약서에 의거 공사의 협력기업에 지원한 대출 지원현황을 시행일 이후 매 3개월 마다 공사에 제공기로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18일

**인천항만공사**

**수협은행**

사장 이 경 규



은행장 신 학 기

